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03. 10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03. 13
- 다. 상 정 일 자 : 2008. 03. 20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세무과장 임석진)**

2007. 10. 4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게 조례상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

- 현 행 제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개정안 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 조정 (안 별표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2,000원	3,000원	1,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병원)	10,000원	40,000원	30,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20,000원	40,000원	20,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0,000원	20,000원	10,000원 인상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20,000원	30,000원	10,000원 인상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5,000원	20,000원	15,000원 인상
체육시설업 신고	20,000원	30,000원	10,000원 인상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20,000원	10,000원	10,000원 인하

**다. 수수료 면제는 타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안 제5조)**

####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 5. 검토의견

#####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체계상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 □ 먼저, 제증명 수수료 요율 조정 건은

2007. 10. 4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명시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우리구 조례상의 수수료를 바꾸려는 것으로 조정대상 수수료는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등 9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8건이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1건으로 개정안대로 조정할시 우리구 세입에는 미약하나마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다음, 수수료 감면대상의 제한 건은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발급하는 제증명과 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등에 제공하는 공부 열람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원칙하에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한 것은 행정정보의 보호와 세입증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의결